

##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9-28	910c2ec3e90b943c4b27f8cc3d6b19c2
2020-09-29	e376c5150ec4bc13ca15296eb2daff14
2020-09-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0-03	2075fe4762a9c7fbb034dcc933f24ea4
2020-10-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 ● 환경부공고제2020-850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1. 제정사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안 제4조)

다. 재포장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6조 및 부칙)

## 3. 의 건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56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환경부고시 제2018-126호)」를 전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 개정(각각 ’20.6.1, ’20.8.18)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단위가 사업장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법 §13 및 영 §20 위임)

- (개념) 신·증설 사업장 등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제5호·제21호 등)
- (사전할당) 사업장 단위로 할당량 산정(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제4항, 안 제19조제1항제1호 등)
- (추가할당) 신설된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인하여 증설된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업체에 할당된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이 증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 기준기간의 명세서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폐쇄되어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가목)
  - 폐쇄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된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간주(안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등
- (할당취소) 사업장의 폐쇄, 가동중지·정지 기준 마련
  - 할당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안 제23조제5호)
  -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의 폐쇄로 간주(안 제23조제6호)
  -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정지·폐쇄한 경우에 해당(안 제24조제1항)